코로나19(오미크론) 관련 등교기준 및 출석인정 처리 기준

1.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(대면수업)

- 대상: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유증상자 및 방역당국 통보대상
- 내용: 코로나19(오미크론) 관련 등교 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'출석'으로 인정함

구분	방역당국 통보	나의 접종상황	격리기간	검사	등교 기준	출석인정 기간	증빙 서류	과제
"내가"	확진자인 경우	접종완료자 미완료자	7일 격리		등교 중지	7일	O	O
	밀접접촉자인 경우	접종완료자	수동감시 (7일)	격리.감시 해제 전 PCR 검사	등교 가능	해당없음	-	-
		미완료자	7일격리		등교 중지	7일	O	O
나의 "동거인이"	확진자인 경우 (재택치료자)	접종완료자	수동감시 (7일)		등교 가능	해당없음	-	-
		미완료자	7일격리		등교 중지	7일	O	O
	밀접접촉자인 경우	접종완료자 미완료자	격리기간 없음	격리 지정일 및 6~7일차 신속항원 검사	등교 가능	해당없음	O	O

※ 단, 원격수업이 가능한 경우 원격수업으로 수강 대체, 담당교수가 원격수업 수강 여부 확인 후, 100% 수강 시 출석으로 처리

※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의거함.

2. 출석인정 절차

▪ 교과목 담당교수
- 학생 연락 후, 대체과제 부여→출석인정허가원 수령(학생 제출)→ 과제물 제출 확인 → 출석인정

▪ 학생
- 출석 인정허가원(서식) 및 증빙자료 제출→ 담당교수에게 연락 후 과제물 확인→과제물 제출

3. 증빙서류 공통사항: 출석인정허가원

가. 내가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인 경우
- 확진자인 경우: 양성결과증명서 또는 확진 문자
- 밀접접촉자인 경우: 신속항원검사증명서

실거주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(예: 문자 통지 사본 등)

나.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인 경우

- 확진자인 경우: 동거인 양성결과증명서 또는 확진문자
- 밀접접촉자인 경우: 신속항원검사증명서, 실거주 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(예: 문자 통지 사본 등)

4. 대학생 백신공결제

가. 대상: 백신접종 당일 및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인정

나. 기준 및 증빙서류

◦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1~2일 출석인정 : 담당교수에게 제출
출석인정허가원 및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내역확인서

◦ 2~3일 이상 지속시 출석인정: 출석인정허가원, 코로나 19백신예방접종내역확인서, 병원 진단서(소견서)

다.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출석인정 및 학생의 증상에 따라 출석인정

◦ 최대기간: 3일.

※ 출석인정절차 코로나19 등교중지관련 절차와 동일